

상호협력 협약서

대구대학교와 사단법인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고 한다)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권보호 및 권익옹호를 위하여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의 협력적 관계망을 통해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권익옹호를 수행하는데 상호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의 범위) 양 기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익향상을 위한 정보 교류
2.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자문 및 연계
3. 각종 사업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
4. 기타 양 기관의 목적을 위하여 협력이 필요한 사항

제3조(신의성실)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을 이행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 본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상대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.

제5조 (유효기간)이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. 다만 만기일 전에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매년 자동 연장된다.

양 기관은 위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·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8년 8월 14일



총 장 김 상 호



사단 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
법인
Research Institute of the Differently Able Person's Right in daegu

이 사 장 이 근 용

이근용